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66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김영호·박용갑·한민수

이해식 • 박희승 • 김문수

문대림 • 이병진 • 강선우

김동아 · 김영배 · 김준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 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4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 인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
	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
	여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
	런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
	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다.